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김호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298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4월 02일

발 의 자:김호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경만선, 김인제, 김춘례,

문병훈, 안광석, 오한아, 우형찬, 이승미, 조상호, 황규복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○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업무처리 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「국세징수법」제21조가 삭제 (2018.12.31.개정)되고, 조례 내 또 다른 준용규정에서는 가산금 부과 ㆍ징수 등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근거법 령을 일치해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점용료 등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업무처리 시 준용하고 있는「국세 징수법」을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변경(안 제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국세징수법」,「지방세징수법」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내용 중"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및 제23조"를"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및 제32조"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)	제8조(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)
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	①
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	
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	
할 수 있다.이 경우, 가산금의 징수	
및 독촉에 관하여는 <u>「국세징수법」</u>	「지방세징수
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	법」제30조 및 제32조
다.	_